

병합심리신청

사건번호 20○○고단 ○○○○호 20○○고단 ○○○○호

사 건 명 절도

피고인 ○ ○

위 피고인에 대한 동일 사건의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고단 ○○○○호 절도피고사건과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고단 ○○○○호 절 도 피고사건이 각 계속 중에 있는 바, 피고인의 주거지가 ○○시 ○○○구 ○○ 동 ○○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○○지 방법원 ○○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3조 단 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2000년 0월 0일

피고인 0 0 (인)

○ ○ 고 등 법 원 귀 중

				COC N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법원	직근 상급법원			www.klac.
신청권자	· 검사 · 피고인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13조	
불복절차 및 기간	없음(형사소송법 403조1항)			